

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얼라이언스번스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u>실제 수익률 변동성</u> 을 감안하여 <u>2등급으로 분류</u> 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매우 낮은 위험	2 높은 위험	3 다소 높은 위험	4 보통 위험	5 낮은 위험	6 매우 높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AB 미국 그로스 증권투자신탁 (주식 - 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AB 미국 그로스 증권투자신탁 (주식 - 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AB 미국 그로스 증권투자신탁 (주식 - 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얼라이언스번스틴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abfunds.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26년 8월 4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8월 4일
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 또는 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50 조좌)
7. 모집 또는 매출기간 (판매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 조성 관련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AB 미국 그로스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펀드코드: 19926)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얼라이언스번스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는 미국 발행인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집합투자기구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주식 위험, 파생상품 위험, 환위험, 유동성 위험, 집중포트폴리오 위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AB 미국 그로스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미국 발행인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인 AB SICAV I - 아메리칸 성장형 포트폴리오(‘피투자펀드’)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투자함으로써 자본성장을 통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추구합니다. 피투자펀드 운용자는 이 피투자펀드를 적극적으로 운용함에 있어 미국 대기업들에 집중합니다. 피투자펀드 운용자는 우량한 품질과 우수한 장기 성장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운용자가 판단하는 증권들로 구성되는 비교적 집중적이고 확신도가 높은 포트폴리오(주로 40~60개 회사들로 구성)를 구축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리서치를 사용합니다(상향식 접근법).

분류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없음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연)		동종유형 총보수(연)	합성총보수·비용(연)	1년	2년	3년	5년	10년
		납입금액의 1.0%이내	판매보수(연)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965%	0.80%	0.87%	1.713%	278	465	661	1,084	2,3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없음	1.665%	1.50%	2.413%	253	492	713	1,140	2,409
	C2		1.415%	1.25%	2.163%					
	C3		1.164%	0.999%	1.912%					
	C4		0.965%	0.80%	1.713%					
수수료선취-온라인(A-e)		0.565%	0.40%	0.58%	1.313%	187	331	483	808	1,77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1.155%	0.99%	1.903%	200	410	630	1,104	2,5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없음	1.015%	0.85%	-	185	380	584	1,023	2,32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e-P)		없음	0.565%	0.40%	-	138	283	435	762	1,7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없음	0.865%	0.70%	-	169	347	534	936	2,13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e-P2)		없음	0.515%	0.35%	-	133	272	418	733	1,668

투자비용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합성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합성 총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펀드의 보수·비용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피투자펀드에서 부과하는 총보수·비용은 약 연0.74%으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1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1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류 C1의 경우 전환에 따른 보수 변동사항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상기 종류 이외 종류 C-w, 종류 I, 종류 S, 종류 S-P, 종류 A-G, 종류 C-G에 대한 세부사항 및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2025.12.31 기준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기 간	(단위: %)				
	최근 1년 (2025.01.01~ 2025.12.31)	최근 2년 (2024.01.01~ 2025.12.31)	최근 3년 (2023.01.01~ 2025.12.31)	최근 5년 (2021.01.01~ 2025.12.31)	설정일 이후 (2010.3.29~ 2025.12.31)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8.93	15.73	19.97	9.09	13.20
비교지수	15.71	19.00	20.23	12.68	13.63
수익률변동성	16.55	15.98	15.52	18.17	16.54

(주1) 비교지수: S&P 500 Index(원화헤지 100%)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주3)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전문
인력
(2025.12.31 기준)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재간접) (단위: %)				운용 경력 년수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	이재욱	1988	선임 포트폴리 오 매니저	14개	29,805억원	8.3	13.34	8.3	13.34	7.75년
부책 임	유재흥	1970	선임 포트폴리 오 매니저	14개	29,805억원	8.3	13.34	8.3	13.34	22년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의 보증을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환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초 투자자산은 이 투자신탁의 표시 통화인 원화 이외의 하나 이상의 이종 통화로 표시됩니다. 이로 인하여 기초투자자산의 통화 변동이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순자산가치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재산에의 투자는 하나 이상의 이종 통화의 가치 변동에 의하여 원화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표시 통화 대비 원화 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으로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달러화로 표시된 투자신탁 자산에 대하여 헤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헤지로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이 환율 변동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에서 편입하는 해외집합투자증권 금액에 상응하는 미달러화 가치에 대하여 환헤지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미달러화의 원화에 대한 목표 헤지비율은 80%~100%수준입니다.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증권가격 변동, 환율변동, 외환시장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증권 등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의 유형, 매도 제한, 시장상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 매각이 어려운 경우, 보다 유동성이 높은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보다 중개 및 기타 거래 수수료 등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단적인 시장 상황, 특히 매수 의향이 있는 매수인 부족으로 인하여 펀드가 그 포지션 또는 보유물량을 청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펀드가 더 낮은 가격을 수락해야 하거나 투자자산을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다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때때로 파생상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을 달성하고 수익률을 높이며 포트폴리오 분산을 목적으로 직접 투자의 방편으로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과 같은 다른 위험에 추가하여, 파생상품의 경우 가격산정 및 평가가 어려울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변동이 관련 기초자산, 금리 또는 지수의 변동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숙련된 운용사가 신중하게 활용할 경우, 파생상품은 투자신탁의 운용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특정 위험을 경감하며, 기초자산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도 특정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를 증가시킬 수 있게 하지만, 파생상품에는 전통적인 투자자산에서 나타나는 위험과는 상이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 더 큰 위험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주식위험	투자신탁의 기초 주식투자자산의 가치는 개별 투자대상회사의 활동과 성과에 따라, 또는 일반 시장과 경제상황,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때로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장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투자신탁은 다양한 국가와 지리적 지역에 위치한 발행회사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국가의 경제는 국내총생산이나 국민총생산, 인플레이션율, 자본재투자, 자기자원 충분성 및 수지균형 면에서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행회사는 내부자거래 규정, 시장조작 금지, 의결권대리행사 요건 및 적시 정보 공시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각 국가별로 발행회사에게 적용되는 보고, 회계 및 감사 기준이 중요한 면에서 상당히 다를 수 있으며, 증권이나 기타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국유화, 강제 수용, 압류 조세, 통화 봉쇄, 정치적 격변, 정부 규제, 정치, 경제적 불안정, 외교상황 변화 등은 해당 국가의 경제나 동 국가에서 이루어진 펀드의 투자자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제 수용, 국유화나 기타 압류로 인하여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진 투자자산의 전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구성, 파산, 도산 등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상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중 포트폴리오 위험	투자신탁은 제한된 수의 발행인, 산업 또는 섹터 또는 국가에 투자할 수 있으며, 따라서 더욱 다양하고 넓은 증권 유형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 투자는 포트폴리오가 투자하는 증권에 불균형적으로 매우 불리한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시장 변동과 불균형하게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발행인, 산업 또는 섹터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요인 또는 경제 요인은 포트폴리오 투자자산의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 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5영업일(D+4) 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 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6영업일 (D+5)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 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 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 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 ·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http://www.abfunds.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 회(http://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수익자	-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 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와 퇴 직연금계좌를 합하여, 이하 ‘연금계좌’라 한다)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 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 며, 연금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으로 과세합 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됩니다.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해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 절차 및 방법	①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 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 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 에 한합니다. 1.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2.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3.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 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으로 합니다. ④1항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얼라이언스번스틴자산운용(주) (☎ 02-3707-3400/ 홈페이지: www.abfunds.co.kr) (외화자산 관련 위탁운용사: AllianceBernstein Hong Kong Limited)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 · 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50조좌)	
효력발생일	2026년 8월 4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abfunds.co.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 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8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8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 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 체감 (CDSC)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 저비용 (G)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I)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50억 이상 개인, 75억 이상 법인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 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 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abfunds.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abfunds.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abfunds.co.kr)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재산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AB 미국 그로스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협회 코드: 19926)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A-e	종류 A-G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e	종류 C-G	종류 C-w	종류 I	종류 S	종류 C-P	종류 Ce-P	종류 C-P2	종류 Ce-P2	종류 S-P
금융투자 협회펀드 코드	19927	AP998	E7849	19928	19929	19930	19931	19933	E7850	B0337	19932	AP999	AH391	BU175	B4955	BU178	AQ00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 없음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 대상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50조좌까지 모집가능하며, 추가형으로 모집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abfunds.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AB 미국 그로스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협회 코드: 19926)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A-e	종류 A-G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e	종류 C-G	종류 C-w	종류 I	종류 S	종류 C-P	종류 Ce-P	종류 C-P2	종류 Ce-P2	종류 S-P
금융투자 협회펀드 코드	19927	AP998	E7849	19928	19929	19930	19931	19933	E7850	B0337	19932	AP999	AH391	BU175	B4955	BU178	AQ00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0. 3. 29.	최초 설정
2010. 7. 26.	신탁업자 보수율 인하 (연 0.05% -> 연 0.04%)
2012. 1. 9.	운용전문인력 변경 (박경림 -> 유재흥)
2012. 4. 24.	운용전문인력 추가 (유재흥 -> 유재흥, 박경림)
2013. 4. 10.	종류 C-P 신설
2013. 6. 19.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인하 (연0.028% -> 연0.025%)
2014. 1. 31.	운용전문인력 변경 (유재흥, 박경림 -> 유재흥)
2014. 4. 14.	종류 A-e 신설
2014. 4. 29	종류 S 신설
2014. 5. 14.	종류 S-P 신설
2015. 7. 3.	종류 C-w 신설
2015. 7. 13.	종류 C-P2 신설
2015. 12. 7.	환매수수료 삭제
2017. 8. 2.	종류 Ce-P 신설
2017. 8. 4.	종류 Ce-P2 신설
2023.12.7.	종류 A-G 및 C-G 신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얼라이언스번스틴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4층 (태평로1가) (대표전화) 02-3707-3400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① 업무 위탁 운용사 및 내용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얼라이언스번스틴 홍콩 리미티드 (AllianceBernstein Hong Kong Limited)
------------	--

업무위탁범위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	--------------

②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 집합투자업자명	얼라이언스번스틴 홍콩 리미티드 (AllianceBernstein Hong Kong Limited)
회사 연혁	1997 년 4 월 14 일 회사 설립 홍콩 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 에 등록됨
회사주소	39/F, One Island East, 18 Westlands Road, Quarry Bay, Hong Kong 전화번호: 852-2918-7888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① 운용전문인력(2025. 12. 31. 현재)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재간접), %				운용 경력 년수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집합 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책임	이재욱	1988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14개	29,805 억원	8.3	13.34	8.3	13.34	7.75 년	- 얼라이언스번스틴자산운용 선임포트폴리오매니저 (2022.5~현재) - 블랙록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 (2017.11~2022.4) - 블랙록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운용팀 트레이더 (2014.9~2017.11) - Societe General, 트레이딩팀 (2013.7~2014.8) - HSBC 은행, 펀드서비스팀 (2011.9~2013.7)
부책임	유재홍	1970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14개	29,805 억원	8.3	13.34	8.3	13.34	22년	- 얼라이언스번스틴자산운용 선임포트폴리오매니저 (2012~현재) - 신한금융투자 FICC운용2팀장 (2010.5~2011.12) - KDB 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해외투자팀장 (2009.5~2010.5) - 얼라이언스번스틴 자산운용 선임포트폴리오매니저 (2008.5~2009.5)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채권운용팀 (2002.7~2008.5)

- *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없음
-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 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② 운용전문인력 최근 3년 변경 내역

날짜	변경 내역
----	-------

2022. 10. 20	책임운용전문인력 “이재욱” 추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유재홍”을 부책임운용인력으로 변경
--------------	---

③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운용전문인력

성명	운용 현황	주요 경력
Stephen Ting	약 20.8억 달러 (2025년 12월 31일 기준)	- 2020.11~현재 AllianceBernstein 홍콩 채권운용팀 - 2015.1~2020.10 HSBC 홍콩 프라이빗 클라이언트팀 운용역

* 상기인은 투자신탁의 해외위탁운용을 총괄하는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팀운용방식으로 운용됩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 (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8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

		서 1년 8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 체감 (CDSC)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지 비용(G)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I)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50억 이상 개인, 75억 이상 법인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 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 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미국 발행인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인 AB SICAV I - 아메리칸 성장형 포트폴리오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투자함으로써 자본성장을 통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1) 집합투자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
2) 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채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및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또는 이에 상응하는 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는 제외함.)과 동일하거나 유사

		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어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등급 이상이어야 함.)
6)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7)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을 포함 통칭하여 “파생상품”이라 합니다.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및 헤지 기법 등의 일환으로 스왑, 옵션, 선물 및 통화거래 등을 포함한 장내 파생상품 및 장외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10) 위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1)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기타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호 내지 7)호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됨)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됨)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을 구성하는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 1)호 내지 7)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		

나. 투자 제한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투자신탁재산상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 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이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4.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

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9.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10.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 ‘가. 투자대상’의 8)호 내지 10)호와 위 ‘나. 투자제한’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② 위 ‘나. 투자제한’ 제(1)항의 제2호 가목 및 나목, 제3호본문,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위 ‘나. 투자제한’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위 ‘나. 투자제한’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⑤ 위 ‘나. 투자제한’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제4항제2호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이 투자신탁의 투자 전략

이 투자신탁은 미국 발행인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인 AB SICAV I - 아메리칸 성장형 포트폴리오(이하 “피투자 펀드”)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교 지수 : S&P 500 Index (원화 헤지 100%)**

주1) S&P 500 Index는 Standard & Poors사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미국 500개 주식의 시가총액 가중평균

지수입니다. 해당 지수는 전체 주요 업종을 대표하는 500개 주식의 종합시가총액의 변동을 통해 광범위한 미국 경제의 실정을 측정할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나. 피투자 펀드의 투자 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인 AB SICAV I - 아메리칸 성장형 포트폴리오의 투자목적은 자본 성장을 통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2)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

운용자는 이 피투자펀드를 적극적으로 운용함에 있어 미국 대기업들에 집중합니다. 운용자는 우량한 품질과 우수한 장기 성장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운용자가 판단하는 증권들로 구성되는 비교적 집중적이고 혁신도가 높은 포트폴리오(주로 40~60개 회사들로 구성)를 구축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리서치를 사용합니다(상향식 접근법).

일반적인 시장 조건에서, 이 피투자펀드는 보통 피투자펀드 자산의 적어도 80% 및 3분의 2 이상을 미국에서 설립되었거나, 미국에서 상당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지분증권에 투자합니다.

이 피투자펀드의 주식 투자자산에는 전환증권, 예탁증서 및 ETF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피투자펀드는 아래와 같은 자산 클래스에 대하여 명시되는 비율까지 투자하거나, 그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 상당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비미국 회사들이 발행하는 지분증권: 15%

이 피투자펀드는 모든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피투자펀드는 규정상 허용되며 이 피투자펀드 투자방침에 부합하는 파생상품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EPM)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피투자펀드는 헷징(위험 완화)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상 파생상품을 활용합니다.

3) 기타 투자방침

예외적으로 불리한 시장 상황의 경우, 방어적인 조치로서 및/또는 유동성 목적상 이 피투자펀드는 순자산의 100%까지 현금 및 현금등가물에 일시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피투자펀드가 방어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피투자펀드는 투자목적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피투자펀드 개요

펀드 설정일	1997년 1월 2일
운용회사	AllianceBernstein L.P.

※피투자펀드의 글로벌 투자설명서는 2021년 6월자로 전반적인 양식 개편이 있었으나, 이로 인한 운용 전략 및 투자대상의 실질적 변경은 없으므로 동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 환위험 관리

집합투자업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시장상황에 따른 환헤지 전략의 실행여부 및 환헤지 실행비율에 따라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편입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 금액에 상응하는 미달러화 가치에 대하여 환헤지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미달러화의 원화에 대한 목표 헤지비율은 80%~100%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헤지로 투자신탁의 환율 변동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증권가격 변동, 환율 변동, 외환시장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해지비용은 목표 해지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해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환해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증권 등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해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해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해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주된 투자대상 자산인 미국 발행인 주식증권의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을 주로 매입하는 구조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것으로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환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초 투자자산은 이 투자신탁의 표시 통화인 원화 이외의 하나 이상의 이종 통화로 표시됩니다. 이로 인하여 기초투자자산의 통화 변동이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순자산가치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재산에의 투자는 하나 이상의 이종 통화의 가치 변동에 의하여 원화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표시 통화 대비 원화 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으로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달러화로 표시된 투자신탁 자산에 대하여 해지를 실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지로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이 환율 변동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의 유형, 매도 제한, 시장상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 매각이 어려운 경우, 보다 유동성이 높은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보다 중개 및 기타 거래 수수료 등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단적인 시장 상황, 특히 매수 의향이 있는 매수인 부족으로 인하여 펀드가 그 포지션 또는 보유물량을 청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펀드가 더 낮은 가격을 수락해야 하거나 투자자산을 전혀 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증권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 펀드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새로운 투자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량 환매 요청 역시 유동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량 환매 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펀드는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증권을 먼저 매도하거나 유동성이 낮은 증권을 할인 가격으로 매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기초자산가치, 기준 금리 또는 지수에 의하여 또는 이와 연계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다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때때로 파생상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을 달성하고 수익률을 높이며 포트폴리오 분산을 목적으로 직접 투자의 방편으로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과 같은 다른 위험에 추가하여, 파생상품의 경우 가격산정 및 평가가 어려울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변동이 관련 기초자산, 금리 또는 지수의 변동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숙련된 운용사가 신중하게 활용할 경우, 파생상품은 투자신탁의 운용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특정 위험을 경감하며, 기초자산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도 특정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를 증가시킬 수 있게 하지만, 파생상품에는 전통적인 투자자산에서 나타나는 위험과는 상이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 더 큰 위험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주식 위험	투자신탁의 기초 주식투자자산의 가치는 개별 투자대상회사의 활동과 성과에 따라, 또는 일반 시장과 경제상황,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때로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장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투자신탁은 다양한 국가와 지리적 지역에 위치한 발행회사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국가의 경제는 국내총생산이나 국민총생산, 인플레이션율, 자본재투자, 자기자원 충분성 및 수지균형 면에서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행회사는 내부자거래 규정, 시장조작 금지, 의결권대리행사 요건 및 적시 정보 공시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각 국가별로 발행회사에게 적용되는 보고, 회계 및 감사 기준이 중요한 면에서 상당히 다를 수 있으며, 증권이나 기타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국유화, 강제 수용, 압류 조세, 통화 붕괴, 정치적 격변, 정부 규제, 정치, 경제적 불안정, 외교상황 변화 등은 해당 국가의 경제나 동 국가에서 이루어진 펀드의 투자자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제 수용, 국유화나 기타 압류로 인하여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진 투자자산의 전부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구성, 파산, 도산 등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상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 위험	많은 증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종종 상당한 변동성을 가지고 변동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요인에 따라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의 예로는 정치 및 경제 뉴스, 정부 정책, 기술 및 업계 관행의 변화, 인구학적, 문화 및 인구 구성 변화, 의료 위기(즉, 팬데믹(pandemic) 및 유행병), 자연재해 또는 인재, 기상 및 기후 패턴, 과학적 또는 연구적 발견, 에너지, 상품 및 천연자원의 비용 및 가용성 등이 있습니다. 전술한 질병 또는 사건에 대한 대중의 공포 및/또는 반응은 현재나 장래에 본 펀드의 투자 및 순자산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높은 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 또는 사건의 발생과 지속은 특정 국가 또는 전세계의 경제 및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 위험의 영향은 즉각적이거나 점진적일 수 있으며, 단기적이거나 장기적일 수 있으며, 단편적이거나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집중 포트폴리오 위험	투자신탁은 제한된 수의 발행인, 산업 또는 섹터 또는 국가에 투자할 수 있으며, 따라서 더욱 다양하고 넓은 증권 유형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 투자는 포트폴리오가 투자하는 증권에 불균형적으로 매우 불리한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시장 변동과 불균형하게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발행인, 산업 또는 섹터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요인 또는 경제 요인은 포트폴리오 투자자산의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격조정정책 위험	피투자펀드는 주식의 대량 매입 또는 판매로 인해 발생된 포트폴리오 순자산가치의 희석화 효과를 막기 위해 가격조정정책을 시행합니다. 가격조정정책의 적용으로 인해 포트폴리오의 평가 및 성과의 변동성이 증가될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 순자산가치가 특정 영업일의 기초 투자자산의 성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펀드 설립지 국가 위험	피투자펀드는 룩셈부르크에 설립되었으며, 룩셈부르크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투자자들은 자국 금융 감독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규제 보호 장치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세법에 따른 과세위험	피투자펀드는 주로 해외 증권에 투자하므로 특정 외국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외국 집합투자업자 관련 위험	피투자펀드는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운용인력의 교체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은 피투자펀드의 운용 및 투자 관련 업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인하여 피투자펀드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달리 투자했을 경우 갖게 될 이익 창출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며, 피투자펀드의 해지 및 청산이

결정될 경우 투자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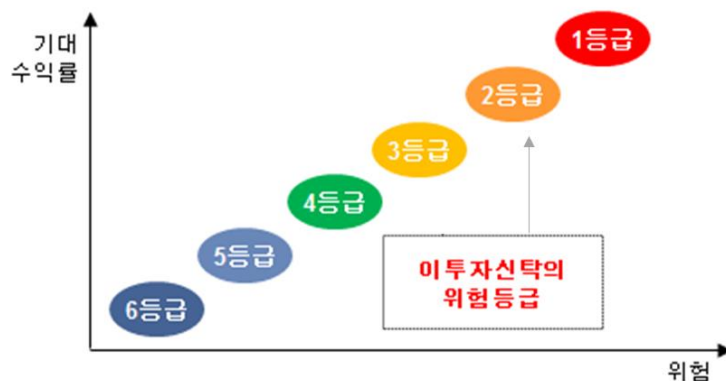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지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을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을 감안하여 6등급 중 **2등급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2025.12.31) 기준 3년 변동성은 33.76%이며, 이러한 변동성은 최근 결산일부터 현재까지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자들은 본 투자신탁에의 투자적합성에 관하여 독립 재정 자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채택한 위험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위험등급 기준표

등급	1 (매우높은위험)	2 (높은위험)	3 (다소높은위험)	4 (보통위험)	5 (낮은위험)	6 (매우낮은위험)
97.5% VaR 모형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주1)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 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합니다.

주2)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투자자는 투자 결정시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본인의 투자 경험 및 투자성향 등에 적합한 지를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위험등급 분류와 판매회사에서 분류하여 사용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판매회사별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2) 시차활용거래

집합투자업자는 시차활용거래(마켓타이밍), 또는 이와 관련한 과도한 매매 및 단기매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차활용거래(마켓타이밍)”는 집합투자기구 순자산가치 산정방법의 불완전성, 결함 또는 시차를 이용하는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에 대한 단기 매입, 환매를 의미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으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자자가 시차활용 거래를 한다고 판단되거나 의심될 경우 투자자의 수익증권 매입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익증권의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선취-온라인(A-e)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고,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판매회사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고,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 (C1)	가입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1년 이상인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 (C3)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1년 이상인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 (C4)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1년 이상인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판매회사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e-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로서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연금 (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e-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

(4) 수익증권의 전환

①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2.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3.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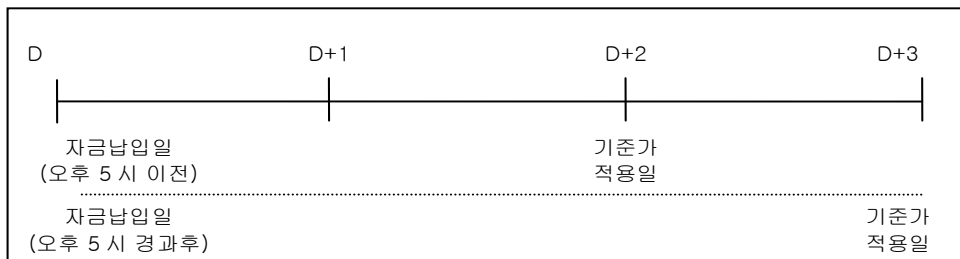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아니합니다.

(5)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적용.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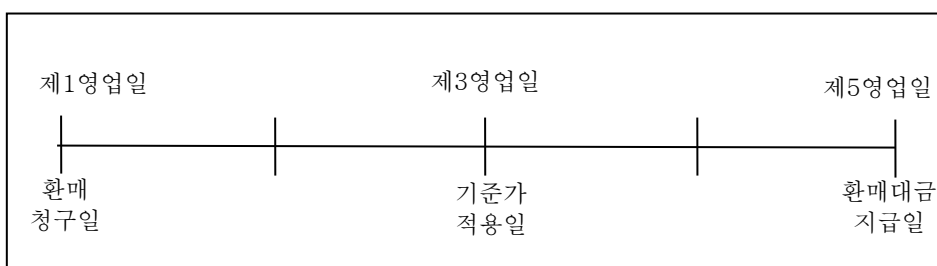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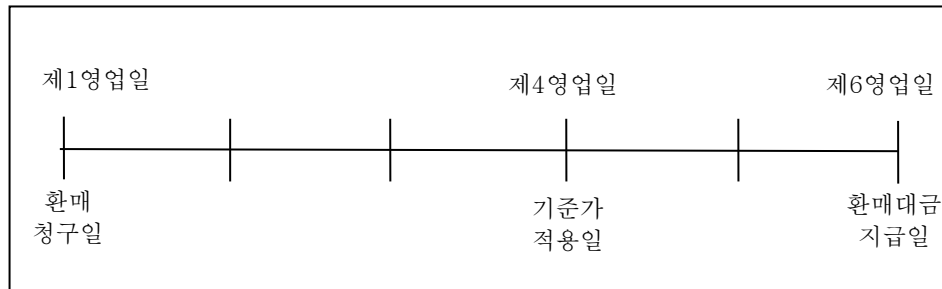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D+4)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D+5)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시 비용 미발생
		○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4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5영업일)전의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④ 환매연기사유 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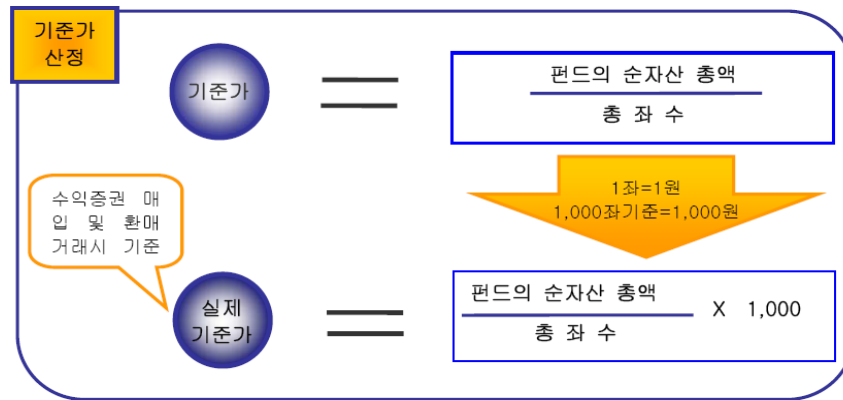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환매연기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제 1 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원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간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시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abfunds.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종류	평 가 방 법
상장주식, 장내파생상품 등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에 공표된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비상장 주식, 채무증권, 장외파생상품 등	취득가격, 거래가격 및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정보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격, 환율 등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부실화된 자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비 고 (지급 시기)
	종류A	종류A-e	종류A-G	종류C1,C2,C3,C4, 종류C-e, 종류C-G, 종류C-w, 종류I, 종류C-P, 종류 Ce-P, 종류C-P2, 종류 Ce-P2, 종류S-P	종류S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이내	납입금액의 0.5%이내	납입금액의 0.7%이내	없음	없음	매입시
후취 판매수수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주) 판매수수료는 위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위 범위내에서 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 (연 %)																	비 고 (지급시기)
종 류		A	A-e	A-G	C1	C2	C3	C4	C-e	C-G	C-w	I	S	C-P	Ce-P	C-P2	Ce-P2	S-P	
보수	집합투자업자 보수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0.10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800	0.400	0.600	1.500	1.250	0.999	0.800	0.990	1.000	0.000	0.030	0.250	0.850	0.400	0.700	0.350	0.200	
	신탁업자 보수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일반사무관리 회사보수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소계	0.965	0.565	0.765	1.665	1.415	1.164	0.965	1.155	1.165	0.165	0.195	0.415	1.015	0.565	0.865	0.515	0.365	
기타비용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0.008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비율		0.973	0.573	0.773	1.673	1.423	1.172	0.973	1.163	1.173	0.173	0.203	0.423	1.023	0.573	0.873	0.523	0.373	
동종유형 총보수·비용		0.870	0.580		1.210				0.750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 (피투자 펀드총보수·비용 포함)		1.713	1.313	1.513	2.413	2.163	1.912	1.713	1.903	1.913	0.913	0.943	1.163	1.763	1.313	1.613	1.263	1.113	
증권거래비용		-	-		-	-	-	-	-		-	-	-	-		-		-	사유 발생시
금융비용		-	-	-	-	-	-	-	-	-	-	-	-	-	-	-	-	-	

주 1) 기타 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합산한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주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펀드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 펀드에서 부과하는 총 보수·비용은 약 연 0.74% (피투자 펀드 운용보수 연 0.70% 포함)입니다. 피투자펀드의 비용은 직전 회계연도의 피투자펀드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비용 및 피투자펀드의 비용의 추정치를 기초로 산출하였으므로, 실제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일반적으로 증권거래비용은 국내외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의 매매수수료 등을,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이 투자신탁의 직전 회계기간의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5) 투자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종류 A 수익증권과 종류 C1 수익증권의 경우,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8개월이 되는 시점이나(종류 C1수익증권의 경우 전환에 따른 보수 변동사항 반영하여 산정함) 추가납입, 보수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2025.12.31기준)을 의미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구 분		1년	2년	3년	5년	10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01	307	419	659	1,37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펀드 총보수·비용 포함)	278	465	661	1,084	2,340
종류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0	173	239	381	80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펀드 총보수·비용 포함)	187	331	483	808	1,776
종류 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1	235	324	516	1,08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펀드 총보수·비용 포함)	228	393	567	942	2,055
종류 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6	333	468	711	1,43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펀드 총보수·비용 포함)	253	492	713	1,140	2,409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2	250	385	675	1,53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펀드 총보수·비용 포함)	200	410	630	1,104	2,514
종류 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3	253	388	681	1,55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펀드 총보수·비용 포함)	201	412	633	1,110	2,527
종류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	37	57	101	22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6	197	302	530	1,206

	(피투자펀드 총보수·비용 포함)					
종류 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	44	67	118	26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펀드 총보수·비용 포함)	99	203	312	547	1,246
종류 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4	91	140	246	55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펀드 총보수·비용 포함)	122	250	385	675	1,536
종류 S-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9	80	124	217	49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펀드 총보수·비용 포함)	117	240	369	646	1,470
종류 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7	220	339	594	1,35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펀드 총보수·비용 포함)	185	380	584	1,023	2,329
종류 Ce-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0	123	190	333	75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펀드 총보수·비용 포함)	138	283	435	762	1,734
종류 C-P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2	188	289	507	1,15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펀드 총보수·비용 포함)	169	347	534	936	2,131
종류 Ce-P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5	113	173	304	69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펀드 총보수·비용 포함)	133	272	418	733	1,668

- * 종류 A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1%로 가정하여 산정함.
- * 종류 A-e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0.5%로 가정하여 산정함.
- * 종류 A-G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0.70%로 가정하여 산정함.
- * 종류 C1의 경우 전환에 따른 보수 변동사항 반영하여 산정함.
- * 종류 S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를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함.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를 또는 총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집합투자업자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소득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대상인 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 상장주식 매매·평가시 환차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의사항]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 (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 금액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하여, 이하 '연금계좌'라 한다)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으로 과세합니다. 관련 사항은 판매회사의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또는 관련 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연금수령요건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인출 -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 (다만, 이연퇴직소득은 제외) -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
세액공제	연간 600만원 이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연간 900만원을 한도로 함)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등: 연금소득으로 과세, 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 연령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연금소득으로 과세, 이연퇴직소득세의 70%
분리과세한도	-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제외) - 연금소득이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등: 기타소득으로 과세, 세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퇴직소득으로 과세, 이연퇴직소득세

(5) 해외주식투자전문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문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됩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문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문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가입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문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해외주식투자전문펀드)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세제혜택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년까지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4 기(2023.01.01~2023.12.31)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15 기(2024.01.01~2024.12.31)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16 기(2025.01.01~2025.12.31)	삼일회계법인	감사의견 확정 전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요약재무정보	제 16 기	제 15 기	제 14 기
	2025.1.1-2025.12.31	2024.1.1-2024.12.31	2023.1.1-2023.12.31
I. 운용자산	1,876,987,332,159	2,066,504,788,332	2,030,714,163,158
증권	1,790,565,712,121	1,936,173,677,277	1,964,428,729,209
현금 및 예치금	86,421,620,038	130,331,111,055	66,285,433,949
II. 기타자산	25,557,500,857	1,917,521,739	43,724,997,639
자산총계	1,902,544,833,016	2,068,422,310,071	2,074,439,160,797
II. 기타부채	57,681,049,890	112,939,561,749	22,488,344,655
부채총계	57,681,049,890	112,939,561,749	22,488,344,655
I. 원본	579,315,389,579	669,045,011,303	857,059,165,971
II. 수익조정금	-189,466,915,854	-334,124,365,560	-134,700,016,272
III. 이익잉여금	1,455,015,309,401	1,620,562,102,579	1,329,591,666,443
자본총계	1,844,863,783,126	1,955,482,748,322	2,051,950,816,142
I. 운용수익	182,527,746,405	440,734,585,121	513,886,579,612
이자수익	1,597,436,156	2,443,726,929	2,151,554,786
매매/평가차익(손)	180,930,310,249	438,290,858,192	511,735,024,826
II. 운용비용	13,950,174,023	15,064,132,713	15,110,120,723
관련회사보수	13,791,628,797	14,899,391,861	14,950,913,191
기타비용	158,545,226	164,740,852	159,207,532
III. 당기 순이익	168,577,572,382	425,670,452,408	498,776,458,889
* 매매회전율	0	0	0
* 매매수수료	0	0	0

주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주3)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제16기 0원, 제15기 0원, 제14기 0원)

주4)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제16기 0원, 제15기 0원, 제14기 0원)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백만원, 백만원)

구분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종류A	20230101 - 20231231	258,304	258,304	29,482	65,273	66,555	151,483	221,231	172,094
	20240101 - 20241231	221,231	221,231	82,396	235,194	181,970	514,931	121,657	-58,506
	20250101 - 20251231	121,657	121,657	55,762	173,899	85,981	273,196	91,438	22,360
종류A-e	20230101 - 20231231	85,932	85,932	14,321	32,739	26,634	62,341	73,619	56,330
	20240101 - 20241231	73,619	73,619	21,712	64,105	43,735	127,391	51,596	10,334
	20250101 - 20251231	51,596	51,596	14,875	48,384	21,467	70,647	45,003	29,333
종류C1	20230101 - 20231231	3,999	3,999	2,005	4,161	4,828	9,597	1,176	-1,437
	20240101 - 20241231	1,176	1,176	1,911	5,193	1,726	4,614	1,362	1,756
	20250101 - 20251231	1,362	1,362	1,710	4,987	2,227	6,631	845	-283
종류C2	20230101 - 20231231	10,397	10,397	6,146	12,615	11,190	24,389	5,353	-1,378
	20240101 - 20241231	5,353	5,353	1,449	3,884	5,895	15,406	906	-6,169
	20250101 - 20251231	906	906	1,366	4,125	1,261	3,663	1,011	1,369
종류C3	20230101 - 20231231	10,013	10,013	8,431	18,652	11,642	25,785	6,802	2,881
	20240101 - 20241231	6,802	6,802	5,251	14,101	10,118	27,879	1,936	-6,976
	20250101 - 20251231	1,936	1,936	628	1,920	2,135	6,305	428	-2,448
종류C4	20230101 - 20231231	10,714	10,714	10,107	22,664	4,140	9,365	16,681	24,013
	20240101 - 20241231	16,681	16,681	7,463	20,964	7,840	22,123	16,304	15,522
	20250101 - 20251231	16,304	16,304	3,314	10,121	4,613	14,578	15,005	11,847
종류C-e	20230101 - 20231231	61,172	61,172	8,885	19,333	17,792	39,872	52,265	40,632
	20240101 - 20241231	52,265	52,265	13,815	38,757	32,418	89,284	33,662	1,737
	20250101 - 20251231	33,662	33,662	10,831	33,392	15,541	48,092	28,951	18,962
종류I	20230101 - 20231231	1	1	0	0	0	0	1	1
	20240101 - 20241231	1	1	953	3,000	0	0	954	3,001
	20250101 - 20251231	954	954	0	0	953	3,372	1	-2,418
종류C-P	20230101 - 20231231	55,248	55,248	7,740	17,302	7,851	17,631	55,138	54,919
	20240101 - 20241231	55,138	55,138	7,896	22,259	13,343	37,396	49,691	40,001
	20250101 - 20251231	49,691	49,691	6,628	20,647	11,166	33,938	45,152	36,399
종류S	20230101 - 20231231	29,222	29,222	2,965	6,793	8,993	21,192	23,193	14,823
	20240101 - 20241231	23,193	23,193	3,028	8,984	8,296	24,397	17,925	7,780
	20250101 - 20251231	17,925	17,925	2,265	7,411	4,361	14,536	15,829	10,801
종류S-P	20230101 - 20231231	26,581	26,581	4,342	10,045	5,611	13,123	25,312	23,503
	20240101 - 20241231	25,312	25,312	3,642	10,816	7,575	22,506	21,379	13,622
	20250101 - 20251231	21,379	21,379	2,665	8,766	4,319	14,553	19,726	15,593
종류C-w	20230101 - 20231231	28,693	28,693	2,937	6,727	27,371	61,356	4,258	-25,936
	20240101 - 20241231	4,258	4,258	3,734	11,628	3,308	10,198	4,685	5,687
	20250101 - 20251231	4,685	4,685	2,057	6,736	3,827	12,869	2,915	-1,449
종류C-P2	20230101 - 20231231	87,924	87,924	12,815	28,611	20,743	46,363	79,996	70,172
	20240101 - 20241231	79,996	79,996	10,711	30,295	20,682	58,623	70,025	51,668
	20250101 - 20251231	70,025	70,025	8,549	27,133	14,980	47,238	63,594	49,921
종류 Ce-P2	20230101 - 20231231	209,700	209,700	64,635	124,839	64,076	124,153	210,258	210,386
	20240101 - 20241231	210,258	210,258	82,399	201,796	91,040	223,383	201,618	188,670
	20250101 - 20251231	201,618	201,618	52,927	144,115	73,830	201,953	180,714	143,780
종류Ce-P	20230101 - 20231231	81,763	81,763	17,982	34,719	17,969	35,126	81,776	81,356
	20240101 - 20241231	81,776	81,776	21,172	52,479	27,605	67,462	75,344	66,793
	20250101 - 20251231	75,344	75,344	15,805	42,907	22,449	62,170	68,700	56,081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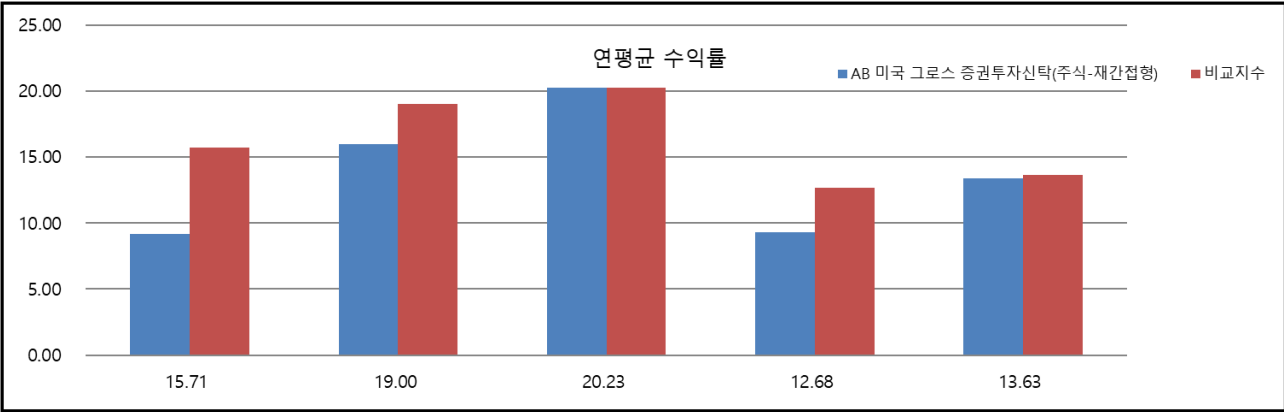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

기 간	최근 1년 (2025.01.01~ 2025.12.31)	최근 2년 (2024.01.01~ 2025.12.31)	최근 3년 (2023.01.01~ 2025.12.31)	최근 5년 (2021.01.01~ 2025.12.31)	설정일 이후 (설정일~ 2025.12.31)
투자신탁전체	9.19	16.00	20.23	9.31	13.35
종류 A	8.93	15.73	19.97	9.09	13.20
종류 C1	8.18	14.94	19.15	8.34	12.42
종류 C2	8.44	15.23	19.44	8.60	12.78
종류 C3	8.71	15.51	19.74	8.87	13.72
종류 C4	8.93	15.74	19.97	9.09	14.06
종류 C-e	8.72	15.52	19.75	8.88	12.99
종류 I	9.65	16.55	20.83	9.91	14.06
종류 C-P	8.88	15.68	19.91	9.04	14.08
종류 A-e	9.36	16.19	20.44	9.52	13.97
종류 S	9.53	16.36	20.61	9.69	13.98
종류 S-P	9.58	16.41	20.67	9.74	13.89
종류 C-w	9.80	16.64	20.91	9.96	13.35
종류 C-P2	9.04	15.85	20.09	9.20	12.74
종류 Ce-P2	9.42	16.24	20.50	9.58	13.62
종류 Ce-P	9.36	16.19	20.44	9.52	13.59
비교지수*	15.71	19.00	20.23	12.68	13.63
수익률 변동성	16.55	15.98	15.52	18.17	16.54

* 비교지수: S&P 500 Index(원화헤지 100%)

- 주1)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3) 설정일 이후 수익률의 경우 각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의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주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주1)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

기간	최근 1년차 (2025.01.01~ 2025.12.31)	최근 2년차 (2024.01.01~ 2024.12.31)	최근 3년차 (2023.01.01~ 2023.12.31)	최근 4년차 (2022.01.01~ 2022.12.31)	최근 5년차 (2021.01.01~ 2021.12.31)
투자신탁전체	9.19	23.23	29.15	-29.86	28.07
종류 A	8.93	22.96	28.91	-30.01	27.84
종류 C1	8.18	22.13	28.03	-30.51	26.96
종류 C2	8.44	22.44	28.34	-30.33	2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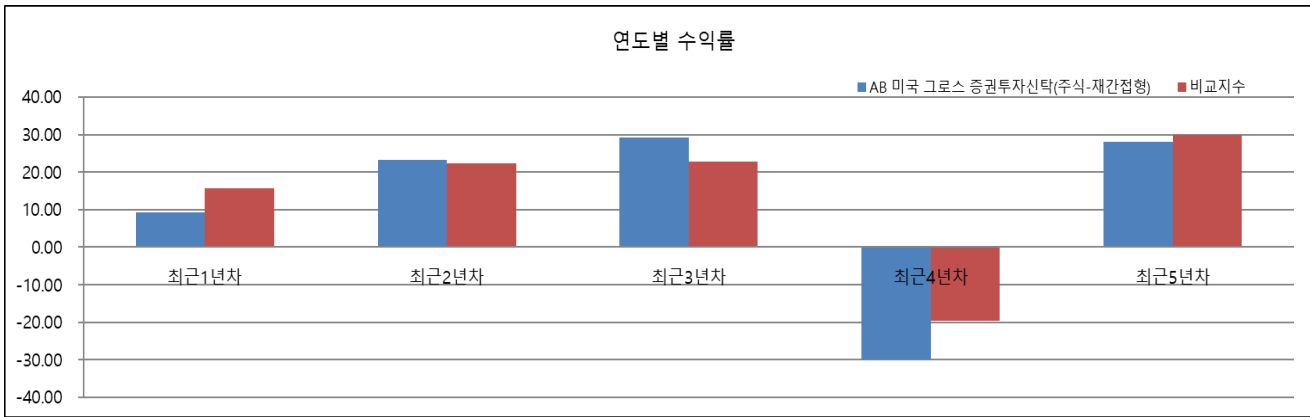
종류 C3	8.71	22.73	28.66	-30.15	27.59
종류 C4	8.93	22.97	28.91	-30.01	27.84
종류 C-e	8.72	22.74	28.67	-30.14	27.60
종류 I	9.65	23.88	29.88	-29.42	28.81
종류 C-P	8.88	22.91	28.84	-30.04	27.78
종류 A-e	9.36	23.44	29.41	-29.71	28.34
종류 S	9.53	23.62	29.60	-29.60	28.53
종류 S-P	9.58	23.68	29.66	-29.56	28.59
종류 C-w	9.80	23.91	29.91	-29.42	28.85
종류 C-P2	9.04	23.08	29.03	-29.93	27.97
종류 Ce-P2	9.42	23.50	29.47	-29.67	28.40
종류 Ce-P	9.36	23.44	29.41	-29.71	28.34
비교지수*	15.71	22.38	22.73	-19.58	29.98

* 비교지수: S&P 500 Index(원화헤지 100%)

주1)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2)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위의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기간수익률이며 종류별로 운용기간이 표 상단에 기재된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수익률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주1)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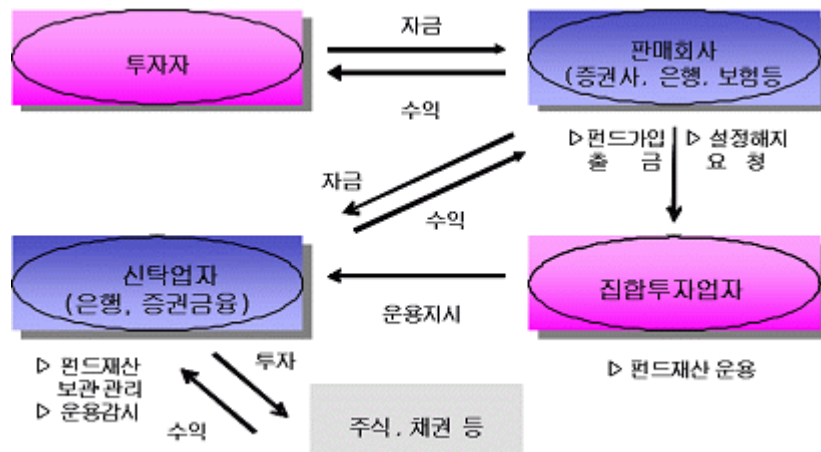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5.12.31 현재/ 단위: 백만원, %)

통화별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한국 원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3,712 (0.73)	0 (0.00)	0 (0.00)	0 (0.00)	67,218 (3.56)	-231 (-0.01)	80,698 (4.27)
미국 달러	0 (0.00)	0 (0.00)	0 (0.00)	1,790,566 (94.71)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9,364 (1.02)	0 (0.00)	1,809,929 (95.73)
합계	0 (0.00)	0 (0.00)	0 (0.00)	1,790,566 (94.71)	0 (0.00)	13,712 (0.73)	0 (0.00)	0 (0.00)	0 (0.00)	86,582 (4.58)	-231 (-0.01)	1,890,628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임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얼라이언스번스타인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14층 (태평로1가) (전화. 02-3707-3400)	
연혁	2007년 10월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설립
	2008년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자산운용업 허가 취득
	2008년 8월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2009년 10월	얼라이언스번스타인 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 목	2024.12.31	2023.12.31	항 목	2024.12.31	2023.12.31
현금 및 예치금	19,156	18,427	영업수익	8,496	8,014
증권	557	572			
유형자산	108	622	영업비용	5,577	5,488
기타자산	2,343	1,881			
자산총계	22,163	21,502	영업이익	2,919	2,526
부채총계	3,894	3,648			
자본금	15,000	15,000	영업외수익	-	-
자본조정	-72	-72	영업외비용	16	29
이익잉여금	3,342	2,925	법인세비용	585	530
자본총계	18,269	17,853	당기순이익	2,319	1,967
부채와 자본총계	22,163	21,501			

라. 운용 자산 규모 (2025. 12. 31. 현재)

(단위: 억원)

종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재간접	MMF	총계
수탁고							29,805		29,805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① 업무 위탁 운용사 및 내용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얼라이언스번스틴 홍콩 리미티드 (AllianceBernstein Hong Kong Limited)
업무위탁범위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②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 집합투자업자명	얼라이언스번스틴 홍콩 리미티드 (AllianceBernstein Hong Kong Limited)
회사 연혁	1997년 4월 14일 회사 설립 홍콩 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에 등록됨
회사주소	39/F, One Island East, 18 Westlands Road, Quarry Bay, Hong Kong 전화번호: 852-2918-7888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회사연혁 등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Tel. 1588-1770)	www.kr.hsbc.com 참조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회사 연혁 등
코스콤 펀드서비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1 (Tel. 02-3771-9800)	- 설립일: 2000년 3월 23일 - 2000년 5월: 일반사무수탁 업무 개시 - 2000년 8월: 금융감독위원회 일반사무관리업무 등록 - 2003년 6월: HSBC그룹으로 합류 - 2020년 11월: 코스콤에서 인수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산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회사 연혁 등
한국자산평가	서울 종로구 을곡로 88 (Tel. 02-399-3350)	www.koreabp.com 참조
KIS자산평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Tel. 02-3215-1400)	www.bond.co.kr 참조
에프앤자산평가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Tel: 02-721-5300)	www.fnpricing.com 참조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두며, 수익자 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 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190조 제6항 단서 및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a)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b)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c)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d)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 188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 193 조 제 2 항

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

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4) 법 제247조 제5항에 정해진 사항
- 5)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70조 제2항에 정해진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그리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9호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9호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할 경우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 인 사유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법 시행령 제268조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거래 제외)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할 비용(중개 수수료) 과 리서치의 가치
- 2) 거래 유형 (예: 상장주식 대량 매매, 장외주식 매매, 파생상품거래 및 채권 매매)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 3) 중개회사의 재무 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 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 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추가형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파생상품투자신탁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해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해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